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62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성훈 · 김기웅 · 박충권
김승수 · 이현승 · 김형동
김성원 · 한지아 · 고동진
이상휘 · 안상훈 · 강명구
서명옥 · 박수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

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3”을 “제3호의3,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제16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66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인비행장치로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

항제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무
인비행장치 조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④ (생략)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2, <u>제3호의3</u> ,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u>제3호의3</u> , <u>제4호의2</u>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u>무인비행장치의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⑥ (생략)

<신 설>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 설>

등의 준수사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③・④ (생 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u><신 설></u>	<u>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2. (현행과 같음) 3. <u>무인비행장치로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제12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u>
---	--